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6. 6. 17.>

휴대용 상표등록증

PORTABLE CERTIFICATE OF TRADEMARK REGISTRATION

| | | | |
|---------------------|---|---|---|
| 등록번호 | 제 | 호 | |
| Registration Number | | | |
|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 제 | 호 | |
| Application Number | | | |
| 출원일 | 년 | 월 | 일 |
| Filing Date | | | |
| 등록일 | 년 | 월 | 일 |
| Registration Date | | | |

상표권자 Owner of the Trademark Right

상표를 사용할 상품 및 구분 List of Goods

제 류

위의 표장은 대한민국 「상표법」에 따라 상표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Trademark Act, the trademark has been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지식재산처장

MINISTER,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REPUBLIC OF KOREA

직인

서명

등록사항

210mm × 148mm(백상지 150g/㎡)

※ 비고

- 휴대용 상표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 등록사항에는 기관의 명칭이 포함된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을 수 있다.